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08 호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1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조례

공 고

- 공고 제2013- 762호 구유재산(남동구 만수동 1118-2) 매각 재공고 19
- 공고 제2013- 763호 구유재산(남동구 만수동 1120-2, 유치원) 매각 22
재공고
- 공고 제2013- 76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연락골지구 소3-1호 25
선 도로개설공사)
- 공고 제2013- 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76, 중로2-58, 2-110 26
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공고 제2013- 783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27
위한 공람·공고
- 보 건 소 30
공고 제2013- 12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폐업 공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1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제43조제8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활성화”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 주택은 제외 한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 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 마.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만 해당한다)보수
- 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 사.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지원금의 지원비율)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의결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받은 관리주체는”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내용에 대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본문 중 “사업완료(완공)보고서(별지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완료(완공)보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지 서식과 같이 하고, 별지 서식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지 서식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른	비 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50	50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공모 사업의 경우는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중앙정부, 인천시 등과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50	5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	5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0	50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50	5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0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른	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50	50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50	50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50	50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50	50	
5.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50	50	
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경조명설비 설치사업	50	50	
7. 다세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하는 사업	50	5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비교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시 지원금 산정(예시)
- 지원액 = $(1\text{천만원} \times 0.5) + (1\text{천만원} \times 0.5 \times 0.1) + (1\text{천만원} \times 0.5 \times 0.1) = 6\text{백만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인근지역주민포함

나. 공용시설물 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4조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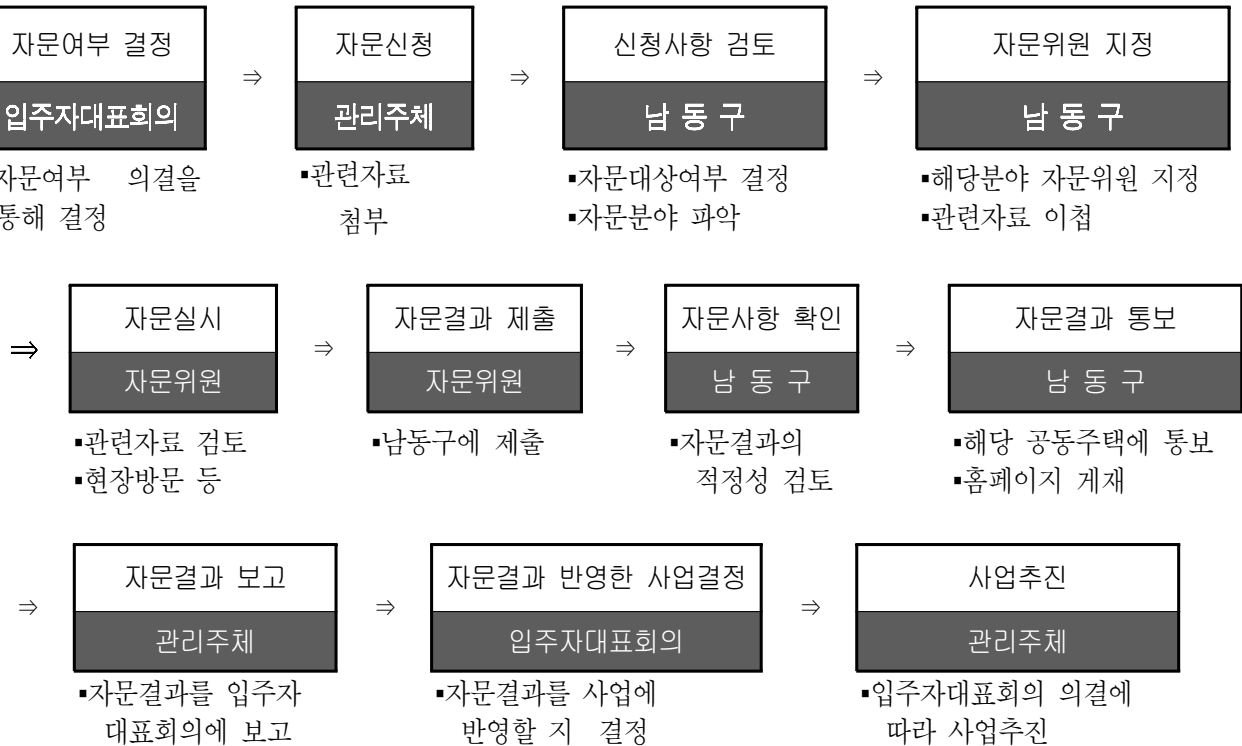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2개월

□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에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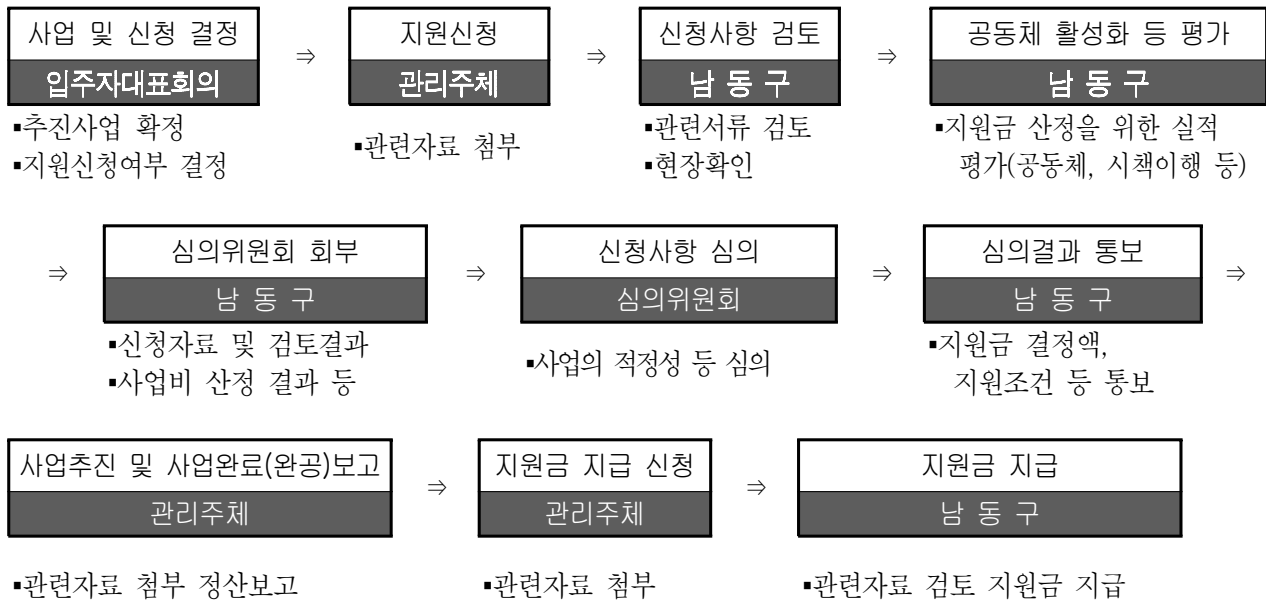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뒷면)

□ 처리절차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총 사 업 비 :
- 산 출 내 역 :

☐ 사 업 내 용

-
-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완료(완공) 보고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친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보고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을 완료하고 당초 사업비 초과분 발생 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부담으로 하는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외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개발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 설치
- 공용시설 관리 지원 사업 내용 추가 및 대상 확대 (제4조제1항제2호)
 -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확대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제4조제2항 부터 제4항 까지) 신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62호

구유재산 매각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재산표시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현황		예정가격(원)	비 고
		지목	면적(㎡)		
1	남동구 만수동 1118-2	대	1,405.3	5,673,908,000	

- 공고기간 : 2013. 5. 7 ~ 2013. 5. 13.
- 입찰기간 : 2013. 5. 14 (10:00) ~ 2013. 5. 20 (16:00)
- 개찰일시 : 2013. 5. 21 (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로부터 15일내

2. 입찰참여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독)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www.onbid.c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 확인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계약대금납부 등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은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봅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시 매 6개월마다 2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하여 분납이자(년6%)를 부과합니다.
-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12%~15%)를 징수합니다.

- 잔금을 납부약정일부터 18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지분전매가 금지됩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써 매매대금 완납 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공동입찰자 포함)는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지구단위계획(토지활용계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63호

구유재산 매각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재산표시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현황		예정가격(원)	비 고
		지목	면적(㎡)		
1	남동구 만수동 1120-2(유치원)	대	580.9	1,493,318,400	

- 공고기간 : 2013. 5. 7 ~ 2013. 5. 13.
- 입찰기간 : 2013. 5. 14 (10:00) ~ 2013. 5. 20 (16:00)
- 개찰일시 : 2013. 5. 21 (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로부터 15일내

2. 입찰참여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독)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 내에 온비드(www.onbid.c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 확인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계약대금납부 등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은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봅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시 매 6개월마다 2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하여 분납이자(년6%)를 부과합니다.
-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12%~15%)를 징수합니다.

- 잔금을 납부약정일부터 18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지분전매가 금지됩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써 매매대금 완납 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공동입찰자 포함)는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지구단위계획(토지활용계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6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년 4월 22일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5. 8 ~ 5. 23
5. 재결서정본 수령 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건설과(☎032-453-2712)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이혜규 : 인천시 서구 한대로 **, ***동 ***호 (경서동, 청라***)
8. 기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76, 중로2-58, 2-11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76, 중로2-58, 2-11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로(대로3-76, 중로2-58, 2-110호선)
 - 나. 명 칭 : 대로3-76, 중로2-58, 2-110호선 도로개설(확장)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대로 3-76호선 : $B=25\sim 27m$, $L=1,070(538m)$, $A=13m^2$
 - 나. 소로 2-58호선 : $B=15\sim 20m$, $L=127m$, $A=158m^2$
 - 다. 소로 2-110호선 : $B=15\sim 20m$, $L=110m$, $A=134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유호건설(주)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7
5. 사업기간 : 2013. 4. 19 ~ 4. 2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83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호(2005.1.11)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호(2009.12.21)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변경 승인된 남동구 만수동 72-46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13. 5. 10 ~ 5. 26.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남동구 소래로 633, ☎032-453-6072)
 - 나.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남동구 만수2동 869-10, ☎032-463-130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 가. 사 업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72-46번지외 10필지
 - 면 적 : 7,227㎡
 - 다.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현주)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869-10번지 2층 (☎032-463-1303)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기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규모 : 부지 7,227㎡, 건축연면적 64,830.27㎡, 지하 6층~지상 8층

- 용도 : 관리사무소, 문화시설, 공중화장실 등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 주차장 : - m²

○ 기타부지 : - m²

- 관리사무소 : - m², 문화시설 : - m², 공중화장실 : - m²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032)453-6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영업시설이 멸실되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절차 등)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 시설물 무단멸실 및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
2. 공고기간 : 2013. 5. 9 ~ 5. 22.
3. 당 사 자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업주명	비 고
일반음식점	구월3-626	두레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95-3, 1층	이*미	

4. 처분내용 : 영업신고 직권말소
5. 사 유 : 영업장(영업시설물) 무단멸실, 사업자등록폐업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7. 사전통지내역
 - 가.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나.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다. 의견제출기한 : 2013. 5. 22일까지
8. 기타(직권말소 예정일) : 2013. 5. 23.